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8. 11. 30 (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24)

2. 제출이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3, 4조)
 - 산모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경우 40만원범위에서 지원
- 서비스 내용(제5조)
 - 출산후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되 5일이상 이용한 경우
- 지원신청 및 이중지원 제한, 환수조치(제6~8조)
 -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류구비 구청장에게 신청
- 운영지침 및 협조요청, 지원관리 (제9조~11조)

※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항과 부칙 2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예산조치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조치 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0.11일~'18.10.31)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견 조례안 “산후조리비 지원 사무”는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고자료 1,2)
-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사례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동작구가 2010.11.18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종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총 4개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경우 광양시, 순창군, 충주시 등 총 15개 시·군·구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견 조례안은 14개 본칙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안 용어와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서비스 내용, 지원신청, 이중지원 제한과 환수조치, 운영지침, 협조 요청 및 지원관리, 부칙의 적용례 등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 한편, 최근의 자녀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이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출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875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연간 3억 8026만 8천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이 편성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1]

모자보건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4호, 2018. 3.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9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참고 자료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5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